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함

□ 주요골자

- 민간위탁 대상사무는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정함.(안제4조)
-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
(안제4조제3항)
-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정함.(안제5조)
- 건설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제7조)
- 수탁기관과의 협약체결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
(안제10조)
-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기간과 절차를 정함.(안제13조)

□ 검토의견

법령 적합성 검토

-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3항에 의하여 제정한 것으로 법적으로는 적합하다고 생각됨

내용적 타당성 검토

- 민간위탁 추진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상 행정조직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정부가 지향하는 규제개혁 측면 뿐 아니라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됨
- 민간위탁 추진은 행정자치부의 99년도 주요 추진사항으로 환경기초시설과 기타 공공시설을 반드시 1기관이상 민간위탁을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임
- 민간위탁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위탁 사무의 적극적 발굴과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투명성, 그리고 수탁기관에 대한 적절한 통제에 있다고 생각됨.
- 이러한 사항에 대해 동 조례안은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다만, 동 조례안 제7조에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설치 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방의원 참여가 배제 되어 있는 바, 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